

사건번호
중앙환조 16-3-140, 17-3-11 (접수일 : '16.10.11., '17. 1.17.)

## 심사보고서

(서울 00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018. 4.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000

# 목 차

1. 사건의 개요 .....	1
가. 당사자	
나. 사건의 경과	
2. 당사자 주장 .....	2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3. 사실조사 결과 .....	3
가. 분쟁지역 개황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다. 신청인 영업 현황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	
마. 기타사항	
바. 적용기준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10
가. 평가 소음·진동도	
나. 전문가 의견	
다. 비산먼지	
5. 인과관계 검토 .....	14
가.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다.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6. 배상수준 검토 .....	15
가. 배상책임	
나. 배상범위	
다. 배상액	
7. 재정(안) .....	17

## 1. 사건의 개요

서울 00구 000대로 12길 00-00(0000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15. 8월부터 재정신청일('16.10.11., '17. 1.17.)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1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16-3-140) 신청인 000 등 98명, 정신적 피해 98,000천원, 조망피해 5,000천원

(17-3-11) 신청인 000 등 6명, 정신적 피해 12,000천원, 영업피해 4,000천원

### 가. 당사자

#### ○ 신청인

- (16-3-140) 000(서울 00구 000로 12길 00, 104동 00호) 등 98명
- (17-3-11) 000(서울 00구 000로 12길 00, 1층) 등 6명

#### ○ 피신청인

- 0000000 주식회사(경기 00시 00구 00로 00-00, 000호)
- 000 주식회사(경기 00시 00구 000로 000, 000호)
- 000000 주식회사(경기 00시 00구 00로 0-00, 00-0호)
- 주식회사 00000건축사사무소(전남 00군 00읍 000로 00-00)

### 나. 사건의 경과

- '05.11.30. : 신청인들 거주시작
- '15. 8. ~ : 민원신청(신청인→피신청인, 관할관청)
- '16. 6.10. : 신청인 아파트 주민 41명 소송제기(0000지방법원)
- '16.10.11. : (16-3-140)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8. : 심사관 1차 현지조사
- '17. 1.17. : (17-3-11) 재정신청서 접수
- '17. 2.20. : 관련사건 소송 진행에 따른 재정절차 중지
- '17.11.30. : 관련사건 소송마무리(화해종결)
- '17.12.15. : 재정절차 재개
- '18. 1.10. : 심사관 2차 현지조사
- '18. 4. 5. : 재정회의

## 2.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 1) 16-3-140 신청인 000 등 98명

- '15. 8.부터 거주지 인근에서 시작된 철거공사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신축 건물에 의해 조망권까지 침해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17-3-11 000 등 6명

- '15. 6.부터 시작된 철거공사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생활불편을 겪었고,

- 중장비가 내뿜는 매연, 소음으로 인하여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관할관청과 피신청인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지속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6,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

- 철거 및 건물 신축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고, 가설방음벽, 가림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관리에 노력하였다.
- 한편, 분쟁지역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신청인의 조망 피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영업피해와 관련하여, 영업상 손익은 경제 상황의 변화 등 제반 사정에 영향을 받는 점, 000 닭매운탕은 영업시간이 저녁에 한정된 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입주한 112세대로 향후 매출 증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들은 0000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0000아파트 101동 주민들과 화해를 한바, 신청인 중 101동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는 과도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00구 0000로00길 31, 0000로00길 31-27 일원의 제2종일반 주거지역이며, 신청인들 거주지는 피신청인 건물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동쪽으로 약 7~10m 이격되어 있다.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 00건설 주식회사 >

#### 1) 공사개요

- 사업명 : 00동 000건물 철거공사
- 소재지 : 서울 00구 00로 1
- 공사기간 : '15. 6. 8. ~ '15.11.18.
- 시행사/시공사 : 00000000(주) / 00건설(주)
- 공사금액 : 462백만원
- 공사규모 : 철거면적 6,541m<sup>2</sup>

####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 정	공사기간	장비투입 내역
철거공사	'15. 6. 8. ~ '15.11.18.	굴삭기, 압쇄기, 덤프트럭

####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6.10.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방진막(Rpp+방진포, 6+2~8mH×281mL), 이동식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서울 00구 00로 1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운동시설(0000관)로 조사되었다.

< 0000건설 주식회사 >

1) 공사개요

- 사업명 : 000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서울 00구 00로 1 일원
- 시행사/시공사 : 000000(주)/ 000종합건설(주)
- 공사기간 : '15.10.30. ~ '16.12.31.
- 공사금액 : 7,209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12개동 중 6개동(105, 106, 108, 109, 111, 112동)  
- 대지면적 3,766㎡, 연면적 5,296㎡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투입장비>

구분	공사기간	주요 장비
토공사	'15.10.30. ~ '16. 1.16.	○ 굴삭기, 오거, 덤프트럭 등
골조 및 마감공사	'16. 1.19. ~ '16.12.31.	○ 콘크리트펌프카, 타워크레인, 알폼 등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신청인은 '15. 9.15.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방진막(RPP+방진포, 6+2~10mH×281mL),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식회사 000000건축사사무소 >

1) 공사개요

- 사업명 : 00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서울 00구 00로 1 일원
- 시행사/시공사 : 000000(주)/ (주)000000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15.10.30. ~ '16.12.31.
- 공사금액 : 6,126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12개동 중 6개동(101, 102, 103, 104, 107, 110동)  
- 대지면적 3,766㎡, 연면적 4,50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투입장비>

구분	공사기간	주요 장비
토공사	'15.10.30. ~ '16. 1.16.	○ 굴삭기, 오거, 덤프트럭 등
골조 및 마감공사	'16. 1.19. ~ '16.12.31.	○ 콘크리트펌프카, 타워크레인, 알폼 등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신청인은 '15. 9.15.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방진막(RPP+방진포, 6+2~10mH×281mL),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신청인 영업 현황

### 1) 0000 닭매운탕

- 신청인은 '10.12. 1.부터 서울 00구 000대로00길 31 1층을 임차하여 닭매운탕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11:00 ~ 24:00까지 이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근거한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매출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원)
2012.01.01.	2012.06.30.	30,000,000
2012.07.01.	2012.12.31.	31,462,181
2013.01.01.	2013.06.30.	31,700,000
2013.07.01.	2013.12.31.	32,000,000
2014.01.01.	2014.06.30.	33,186,700
2014.07.01.	2014.12.31.	33,000,000
2015.01.01.	2015.06.30.	31,000,000
2015.07.01.	2015.12.31.	30,200,000
2016.01.01.	2016.06.30.	33,000,000
2016.07.01.	2016.12.31.	29,500,000

### 2) 0000

- 신청인은 '10.10.11.부터 서울 00구 000대로00길 31 1층을 임차하여 피부미용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09:00 ~ 19:00까지 이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근거한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매출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원)
2012.01.01.	2012.06.30.	5,736,359
2012.07.01.	2012.12.31.	5,709,091
2013.01.01.	2013.06.30.	6,327,269
2013.07.01.	2013.12.31.	7,631,819
2014.01.01.	2014.06.30.	7,663,652
2014.07.01.	2014.12.31.	9,659,118
2015.01.01.	2015.06.30.	8,731,819
2015.07.01.	2015.12.31.	8,513,655
2016.01.01.	2016.06.30.	5,713,649
2016.07.01.	2016.12.31.	5,858,197

####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 00구에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84회 제기되었으며, 2회 소음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고, '16. 7.12. 방음·방진시설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소음 측정 결과>

측정일자	분야	장소	결과	행정처분	비고
'16. 6. 2.	소음	000대로00길 00-00, 000동 000호	71dB(A)	개선명령, 과태료	기준 : 65dB(A)
'16. 7.12.	먼지	000로 1	위반	과태료	
'16. 9.12.	소음	000대로00길 00-0, 000동 000호	68dB(A)	개선명령, 과태료	

\* 최초 신고 시 공사차량 진출입 게이트를 1개 신고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지도·점검('16. 7.12.) 시 진출입 게이트 2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확인됨

#### 마. 기타사항

##### 1) 동일 원인 소송결과(0000지방법원 2016가단19658)

- '16. 6.10. 이번 환경분쟁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0000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7.11.30.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해가 성립되었다.

- 피고[(주)00000, (주)00종합건설, (주)0000건축사사무소]는 서울 00구 000대로00 길 31-9 000동에 거주하는 원고(000 등 42명)들에게 '17.11.30. 까지 세대별로 각 2,500천원을 지급한다.
- 원고의 거주지와 마주보고 있는 피고들이 건축한 0000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되, 차면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면 그 설치에 갈음하여 '17.11.30.까지 세대별로 각 3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원고가 제기한 소는 신축공사에 한정되었고, 철거공사 시공사인 0000(주)는 피고가 아니었다.

## 2)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폐기물배출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000건설(주), (주)000건축사사무소의 총 10일의 공휴일 공사가 확인되었다.

## 바.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을 적용한다.
- 다만, 주거목적이 아닌 영업의 목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에게는 소음 70dB(A), 진동 70dB(V)을 적용한다.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평가 소음·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2dB(A), 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평가 되었다.

### 나. 전문가 의견

#### 1) (16-3-140) 조망 피해[(주)0000평가법인 000 이사]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건축 전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 저해 피해는 없다.

## 2) (17-3-11) 영업 피해[(주)0000평가법인 000 이사]

- 신청인들의 정상영업 기간인 '12 ~ '15년상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여 적정매출액을 산정하였고, 피해기간 동안의 과세표준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감소액으로 평가하였다.
  - 000 닭매운탕 월평균매출액 : '12 ~ '15년 상반기 매출액 222,348,880 / 42월 = 5,294,020원/월
  - 0000 월평균매출액 : '12 ~ '15년 상반기 매출액 51,459,120 / 42월 = 1,225,210원/월
- 공사기간 동안 신청인들의 적정매출액과 실질 매출액과 비교한 매출감소액은 000 닭매운탕은 총 2,592,360원이고, 00000은 1,968,280원 이다.

<기간별 매출감소액>

(단위 : 원)

구분	피해기간	적정매출액(A)*	과세표준 매출액(B)**	매출 감소액(A-B)
000 닭매운탕	'15. 7. 1. ~ '16.12.31.	95,292,360	92,700,000	2,592,360
00000	'15. 7. 1. ~ '16.12.31.	22,053,780	20,085,501	1,968,270

\* 적정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피해기간(18개월)

\*\* 과세표준매출액 : 피해기간('15.7. ~ '16.12.)의 과세표준 매출액의 합

- 영업이익률은 신청인들의 영업형태, 고용인 여부 등을 감안하여 000 닭매운탕의 경우 30%, 00000의 경우 35%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영향, 공사장비로 인한 보도방해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업피해율은 20%로 평가 되었다.
- 이 사건 신청인들의 영업피해액은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영업피해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단위 : 원, %)

구분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영업피해율	영업피해액
합 계				<b>293,310</b>
000 닭매운탕	2,592,360	30	20	155,540
00000	1,968,270	35	20	137,770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률 × 피해율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고, 이동식 살수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관련 1회 행정처분이 있었다.

## 5. 인과관계 검토

### 가.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먼지피해 개연성 인정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 방진막이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철거 공사 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없었고, 신청인들이 먼지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었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 다.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 6.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000000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철거업체인 0000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00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 나. 배상범위

#### 1)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 철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000 등 5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 ~ 290,000원으로 한다.
- 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000 등 40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000 등 9명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한 신청인 000은 배상대상에

서 제외한다.

## 2)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000 등 56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 ~ 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 ~ 560,000원으로 한다.
  - 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000 등 40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신청인들과 화해한 장지수 세대의 3명 및 000세대의 4명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해기간 중 거주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한 신청인 000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신청인 먼지피해를 입히고,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휴일 공사 가산 10% 및 먼지피해 가산 10%를 더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총20%를 가산한다.

## 3) 영업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000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피해 배상은 기여도 별로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합계	철거공사	신축공사
	<b>293,310</b>	<b>96,780</b>	<b>196,530</b>
000 닭매운탕	155,540	51,320	104,220
00000	137,770	45,460	92,310

### 다. 배상액

#### 1)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배상액

- 철거로 인한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8,935,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6,540원을 더하여 총 8,961,540원이다.

## 2)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배상액

-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4,700,000원, 가산액(공휴일 공사, 먼지피해) 2,48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51,160원을 더하여 총 17,231,160원이다.

## 3) 영업피해 배상액

- 영업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93,310원, 재정신청 수수료 860원을 더하여 총 294,170원이다.

# 7. 재정(안)

## 가. 주 문

- 1) 피신청인 00000 주식회사와 0000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0 등 54명에게 금8,961,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 피신청인 00000 주식회사와 0000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00건축사사무소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 등 56명에게 금 17,231,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3) 피신청인 000000 주식회사와 0000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건축사사무소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 등 2명에게 금 197,1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4) 피신청인 00000 주식회사와 0000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000 등 2명에게 금97,0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신청인 000 등 4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000 등 5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나. 이 유

-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